

光州直轄市西區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條例案 審查報告書

1992. 12. 22

社會産業委員會

1. 審查經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11月 24日. 西區廳長 提出

나. 回附日字 : 1992年 11月 24日 回附

다. 上程日字 : 第20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定期會)

第10次 社會産業委員會(1992. 12. 22)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清掃課長 姜宇鉉)

가. 提案理由

- 廢棄物管理法에서 分離된 污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關한 法律의 施行으로 過怠料, 糞尿·畜産廢水의 處理等의 業務가 區廳長 權限으로 規定되어,
- 市條例에 의하여 處理되던 同業務를 區廳에서 遂行하기 위하여 區條例를 制定코자 함.

나. 主要骨子

- 淨化槽等의 清掃通知 (第2條)
- 公衆便所의 設置·管理 (第3條)
- 廢水의 蒐集·運搬 및 淨化槽等의 清掃代行 (第4條)
- 家畜飼育 制限地域 指定 (第5條)
- 家畜飼育者의 義務 (第6條)
- 手數料 賦課徵收 (第7條)
- 過怠料 賦課基準 (第8條)
- 過怠料 賦課徵收 (第9條)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廉九烈)

- 地域實情에 맞춰 住宅 및 아파트 建立等으로 住居地가 늘어남에 따라 家畜飼育 制限地域을 擴大 調整해야 하고,
- 糞尿蒐集運搬 手數料와 淨化槽 手數料 引上 調整도 現實에 맞게 되었으며,
- 過怠料 賦課 基準도 環境處 指針에 의거 施行되게 되는등 現實에 맞는 條例案 이므로 制定하여 施行함이 妥當함.

4. 質疑 및 答辯 要旨

質 疑	答 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成採 委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畜飼育 制限區域內에 既存 家畜飼育者 및 施設 移設方案. - 管内 家畜飼育 許可件數는 몇件 인가? ○ 金善文 委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畜飼育 制限區域 設定時 地域 經濟課와 協議하여 決定 했는가? (93年度 豫算審查時 畜産振興을 위해 豫算確保해준 事實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清掃課長 姜宇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管内 多量 家畜飼育者 2個所가 있으며, 1個所는 2個月 以內에 自進 移設하겠다는 承諾이 있었고 1個所는 移設 또는 다른 方法을 擇하도록 懇通하고 있습니다. - 許可된 件數는 없슴. ○ 清掃課長 姜宇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産振興事業에 關聯된 地域은 除外하고 決定된 것임.

5. 討論要旨

없 습

6. 審查結果

原案可決

7.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광주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예관한조례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예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조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변소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변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변소를 설치 또는 지정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업으로 하는자 (이하 "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론수별, 형식별 대수 (음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㉔구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 전에 그 사실을 대형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㉕대형업자는 분뇨수거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의 제한)㉑구청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 부업용 소·말·돼지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도건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방법용·애완용·실업용등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가정의 방법용은 2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㉓구청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자와 제한 지역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배설물의 하천등에 무단 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3.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7조 (수수료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본묘의수집·운반과 정화조의 내부청소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구청장은 본묘관련영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장비에 본묘(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9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취소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분에 대한이의제기 통보서, 수납부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구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